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
2024. 12. 10.(화) 10:00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계획안

(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00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3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

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통행불편 최소화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 도모

나.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

도로굴착복구(도로포장) 및 굴착으로 손상된 도로정비

불량맨홀 정비, 굴착복구 업무수행 순찰차량 유지관리비

5.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5년도말 조성액 ㉠	2025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5년도말 조성액 ㉡=㉢+㉠	비고
		수입㉢	지출㉣	증 감 ㉤=㉢-㉣		
도로굴착 복구기금	2,693,082	2,083,611	2,004,907	78,704	2,771,786	

○ 자금 운용 계획

-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수입액	증 감
계	4,776,693	4,189,935	586,758
공공예금 이자	127,757	43,026	84,731
원인자 부담금	1,955,854	1,599,000	356,854
예치금 회수	2,693,082	2,547,909	145,173

-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 감
계	4,776,693	4,189,935	586,758
일반운영비	4,907	4,207	0
시설비 (복구공사,불량맨홀정비)	2,000,000	1,450,000	550,000
예치금	2,771,786	2,735,728	36,058

6. 검토의견

○ 기금 개요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에 따라 도로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재원 조성으로 함.

○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

- 수입내역

공금예금 이자 1억 2,775만원

원인자부담금 19억 5,585만원

총 20억 8,361만원이며,

- 지출내역

일반운영 490만7천 원

도로굴착복구공사비 18억 원

불량맨홀 정비 2억 원

총 20억 490만 7천원입니다.

-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도로굴착 복구 및 굴착으로 손상된 도로 정비 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기금의 용도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□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7.18., 2021.12.31.>

제2조(기금의 재원)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16.7.18., 2020.9.18.>

1. 「도로법」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<개정 2016.7.18.>
2. 기금의 이자수익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.<개정 2016.7.18.>

1. 도로굴착복구공사
2.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(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)
<개정 2020.9.18.>
3.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·연구·감독업무
4.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